

대전지방법원 2016. 9. 2 선고 2016나175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6. 9. 2 선고 2016나1753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6. 2. 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2016. 8. 19.

판결 선고2016. 9. 2.

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6. 2. 2.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219m² 지상 건물, 같은 도면 표시 1, 2, 23,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2m²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2014. 11. 26.부터 위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9,09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"나.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나.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 원고와 L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매도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를 재개하라고 종용하여 피고가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 점, 원고는 L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낙찰대금의 약 2배인 630,000,000원까지 올려놓고 피고가 위 돈을 제공하려고 하자 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은 한편 피고로서는 이

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공사대금 약 1,000,000,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.

2) 판단 가)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58173 판결,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67651, 67668 판결 등 참조).

나) 을 제1 내지 1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제1심 증인 M,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 대표이사 N가 L의 처남이고 원고 기일입찰표의 '전화번호란'에 L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, L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재매수 및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L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의사 없이 마치 매도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재개하라고 종용하였다거나,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낙찰대금의 약 2배인 630,000,000원까지 올려놓고 피고가 위 돈을 제공하려고 하자 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). 한편,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 피고는 건축비 등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.

다)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정정미

판사김효연

판사고영식

별지